

대한지리학회 우수논문상 규정

2006년 6월 10일 개정

2013년 11월 22일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『대한지리학회 우수논문상』시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논문과 기간) 우수논문상의 심사대상 논문은 당해 정기총회 직전년도 대한지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한다.(2013.11.22.개정)

제3조(심사대상자) 위 우수논문상의 대상자는 대한지리학회 회원이어야 한다.

제4조(심사위원회) ① 대한지리학회 우수논문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한지리학회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함)를 두며,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.

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-7인으로 구성하고,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수행하며, 심사위원은 편집위원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.

1. 논문심사의 기본원칙 및 규정
2. 관련규정의 개폐
3.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심의
4. 기타 필요한 사항

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심사절차) ① 위원장은 심의를 거쳐 해당 분야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하도록 한다.

②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.

제7조(심사위원회의 임기) 심사위원회의 임기는 대한지리학회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한다.

제8조(심사 및 시상) 우수논문상의 심사는 매년 5월 중순까지로 하고, 시상은 정관 제22조의 정기총회에서 하며,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.(2013.11.22.개정)

제9조(위임규정) 이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기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11.22.)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(경과조치) 2014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우수논문상 대상논문은 2012년 10월호부터 2013년 12월호까지 대한지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한다.